

한국철도학회논문집논문심사규정

제 정: 1998.02.11.

최근개정: 2020.03.23.(편집위원회 의결)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철도학회(이하 '학회') 한국철도학회논문집(이하 '논문집')의 논문투고규정에 의거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심사주관) 편집인이 지정한 심사주관 부편집인이 모든 심사과정을 주관한다.

제3조 (심사위원 위촉)

- ① 심사주관 부편집인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- ② 위촉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재심 및 그 이후의 심사(이하 '재심')의 경우 이전 심사에 위촉된 심사위원을 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위촉된 심사위원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.

제4조 (심사위원 해촉)

- ① 심사위원이 초심 위촉을 받고 2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1회 독촉하고 위촉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심사위원이 재심 위촉을 받고 1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1차 독촉하고 위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 (심사위원 의무)

- ①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정한 심사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을 심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심사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수해야 한다.
- ③ 심사위원의 해촉 또는 심사 완료시점에 심사 의뢰된 논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.

제6조 (심사기간)

- ① 초심의 경우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 교체 위촉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.
- ② 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 교체 위촉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.

제7조 (심사의견서)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견서를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.

제8조 (심사결과의 판정구분) 심사결과의 판정은 채택불가, 재심, 조건부채택, 채택으로 구분하며, 판정결과는 교신저자에게 통보된다.

제9조(심사결과의 판정시점)

- ① 심사기간 중 최소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심사의견서만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.
- ② 심사기간을 초과하여 2회 이상 심사위원을 교체 위촉했음에도 1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부터만 심사의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기 접수된 심사의견서와 심사주관 부편집인의 심사의견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심사결과의 판정기준)

- ① 심사결과는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다음 ②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심사결과의 판정은 심사주관 부편집인의 판단으로 결정한다.
- ② 심사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(채택) 접수된 논문의 상태로 게재 가능한 경우에 '채택'을 판정할 수 있다.
 - (조건부채택) 논문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오타 등의 미미한 수정 이외에 다른 중요한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이 없어서 재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건부채택을 판정할 수 있다.
 - (재심) 위촉 심사위원 중 채택불가가 1/3 이상이거나 채택불가를 포함하여 재심이 1/2 이상인 경우 재심 이하로 판정한다.
 - (채택불가) 접수된 논문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채택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
 - (1)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
 - (2) 본 논문집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 - (3) 독창성 및 학술적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
 - (4)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
 - (5) 연구내용과 결과 또는 결론이 무관한 경우
 - (6) 본 논문집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 크게 위반한 경우
 - (7) 참고문헌의 인용이 크게 부실하거나 허위인 경우
 - (8) 영어 표기가 심하게 부정확한 경우
 - (9) 기타 명백한 채택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상기 판정기준은 위촉된 심사위원도 사용할 수 있다.

제11조 (수정 및 보완)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단,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초심의 경우 3개월, 재심 이상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교신저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된 논문의 제출이 없으면 채택불가로 처리한다.

제12조 (심사결과 확정판정)

- ① 심사주관 부편집인이 채택 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인에게 추천하면 담당 편집인이 판정 결과를 검토하여 확정 판정한다.
- ② 논문심사결과 확정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.

제13조 (논문심사료) 심사의견서를 회신한 심사위원에게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 (규정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1/3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편집자문위원은 참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15조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인 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 (1998.2.11.)

1. 본 규정은 1998.2.1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5.1.20.)

1. 본 규정은 2005.1.20.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2007.10.22.)

1. 본 규정은 2007.10.22.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2009.2.23.)

1. 본 규정은 2009.2.23.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2009.10.16.)

1. 본 규정은 2009.10.16.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2010.3.3.)

1. 본 규정은 2010.3.3.부터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2010.6.11.)

1. 본 규정은 2010.6.11.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(2011.5.26.)

1. (일부개정) 제10조 ②항 및 제 13조 ②항은 2011.5.26.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2012.5.18.)

1. (일부개정) 제12조 ②항은 2012.5.18.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칙 (2020.3.23.)

1. 본 규정은 2020.3.23.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.